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2.

발 의 자 : 양향자 · 임호선 · 김성원
강병원 · 이용호 · 이종성
김홍걸 · 한정애 · 구자근
권은희 · 전주혜 · 최연숙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,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,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,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

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